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,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대체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 기준 개선(안 제32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제2호사목 중 “이내”를 “이내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)	제32조(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)
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 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청원휴가	2. -----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사.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: 10 일 <u>이내</u>	사. ----- - <u>이내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 5일 이내)</u>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2677